

Overweight
(Maintain)의료기기 Analyst 신민수
alstn0527@kiwoom.com

피부미용 장비, 독신, 필러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일몰 예정

! 지난 8/4일 “생채기 났다고 안 죽는다”, 9/25일 “부가세 환급, 이 수급이 식기 전에 돌아오나”, 10/13일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가능성 상승” 보고서로써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 내용을 다뤘습니다. 헌법에는 예산안과 이와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에 관한 처리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로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 조특법 제107조의 3항이 대안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특혜는 일몰될 예정입니다. 관련 긍정적 모멘텀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쉬우나, 근본적인 국내 에스테틱의 경쟁력이 약화된 점은 없습니다.

>>> 헌법에 명시된 기한에 맞춰 진행된 대안 통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은 내년이 개시되기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영향을 주는 재정안이고, 그에 따라 헌법 제54조의2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들도 같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 등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결정한다.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 지난 1일에는 여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하나로 모아 대안(代案)이 접수되었다(의안번호 2214738).

>>> 외국인 대상 피부미용 부가세 환급 관련 조항은 미포함

해당 대안의 의안원문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 가치세 환급을 다루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련 조항이 야당안 '26년 12월 31일, 또는 여당안 '28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첫 보고서 제목으로 돌아가 “생채기 났다고 안 죽는다”

최근 피부미용 섹터의 3Q25 실적 부진,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으로 주가 조정이 이뤄지며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상황 속에서 긍정적 모멘텀의 소멸은 다소 아쉬울 수 있다.

대신 이번 내용을 다뤘던 첫 번째 보고서의 제목처럼 “생채기 났다고 안 죽는다”. 중국의 한일령 관련 우리나라의 손해가 예상되고 있고,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실질 구매력 상승도 피부미용 산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지역적인 이점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피부과는 성황리에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모습은 없었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2월 2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제108조(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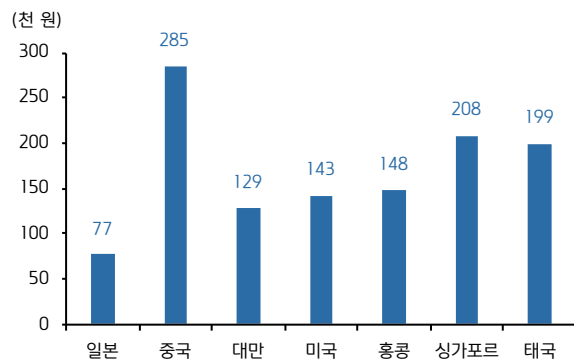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타임라인

날짜	산업 영향	내용
2025-07-31	부정	정부의 '2025 년 세제개편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5 년 12 월 31 일자로 일몰 결정
2025-08-22	긍정	야당 의원 16 인, '26 년 12 월 31 일까지 특례 기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212306)
2025-09-09	긍정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K-문화 언급, 성형 관광에 대한 고부가가치 시사
2025-09-24	긍정	여권 인사의 환급 일몰 연장 추진 계획 기사 보도
2025-10-02	긍정	여당 의원 10 인, '28 년 12 월 31 일까지 특례 기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 발의(의안번호 2213460)
2025-12-01	부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에 제 107 조의 3 조항 미포함, '25 년 12 월 31 일 일몰 기간 연장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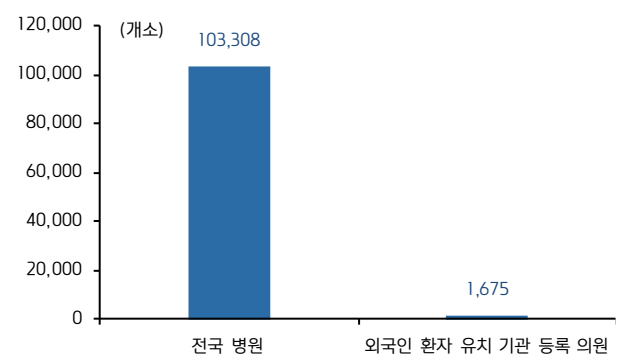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대한민국국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가별 1인당 미용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정치



주) '25년 8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당 소비액 기준
자료: 전자공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4년 하반기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수



자료: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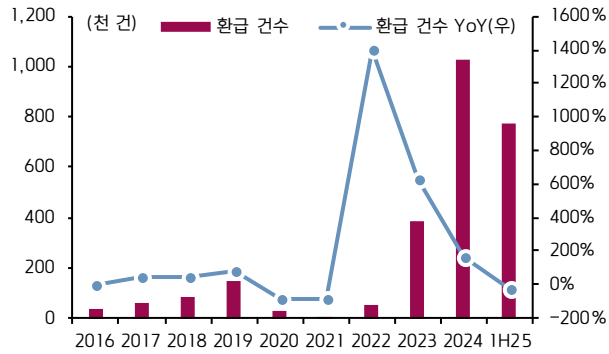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의료서비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자료: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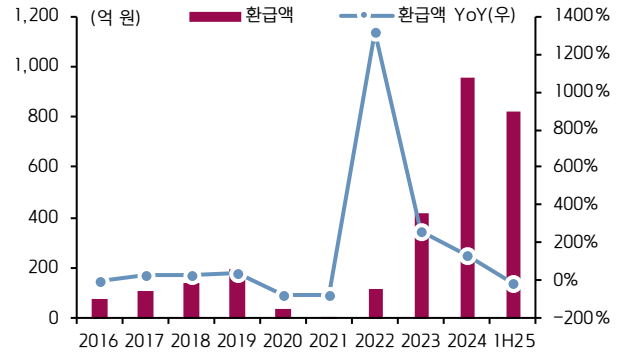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건수 추이



주) '16년은 4~12월 기준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이



주) '16년은 4~12월 기준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시술별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영역 부가가치세 환급 추이

연도	쌍꺼풀수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술	색소모반주근깨 등	여드름 치료술	지방용해술	피부재생술 등	합계
2016(4~12 월)	6,190	2,929	67	2,020	369	760	10,324	22,659
2017	6,821	4,446	112	2,603	455	1,131	15,582	31,150
2018	4,406	8,373	121	3,593	535	1,042	22,073	40,143
2019	11,826	26,370	302	3,865	792	899	20,163	64,217
2020	1,519	3,582	67	664	94	91	3,622	9,639
2021	353	384	8	73	14	26	499	1,357
2022	4,168	7,187	114	547	136	259	7,303	19,714
2023	13,957	34,768	349	2,199	509	4,864	52,267	108,913
2024	37,668	66,812	2,150	7,874	1,915	19,600	308,341	444,360
1H25	20,045	50,741	2,253	12,865	3,012	18,370	416,148	523,434
합계	106,953	205,592	5,543	36,303	7,831	47,042	856,322	1,265,586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5년 조세특례 예비 타당성 및 심층 평가 추진 일정

'2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추진일정

구분	일몰기한 도래 및 기존 주요 제도	신설 제도		기타
1월	금년도 평가 준비 - 평가팀 구성(연구진 등),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계약체결 준비			
2월 ~ 5월	심층평가 실시 (2월~)	예비타당성 평가 실시 (2월~)	조세특례 건의 양식 및 '26년도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안내 * 각 부처에 지침 통보	지침 개선 등 평가 개선사항 발굴 (연중)
6월 ~ 7월	평가 내용 검토 및 세법개정안 반영 (6~7월) 세법개정안 발표(7월 중)			
8월	(각부처 → 기획재정부) '26년도 조세특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요구(8.31.까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8월)			
9월 ~ 12월	세법개정안 및 성과평가 결과 국회 제출(9.2.)			
	'26년도 일몰기한 도래 제도 및 기존 주요 제도 중 심층평가 대상 후보 검토(10월)	예비타당성평가 요구 및 직권 선정에 따른 '26년도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후보 검토(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개최(12월) - '26년도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선정				

자료: 기획재정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혁

일자	내용	특례 일몰 시기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환급 특례 조문 신설 (제 107 조의 3)	-
2016-04-01	시작	2017-03-31
2016-12-20	9 개월 연장	2017-12-31
2017-12-19	1 년 연장	2018-12-31
2018-12-24	1 년 연장	2019-12-31
2019-12-31	1 년 연장	2020-12-31
2020-12-29	2 년 연장	2022-12-31
2022-12-31	3 년 연장	2025-12-31
2025-07-31	일몰 예정	2025-12-31
2025-08-22	야당의 일몰 1 년 연장 법률개정안 발의	일몰 예정
2025-10-02	여당의 일몰 3 년 연장 법률개정안 발의	일몰 예정
2025-12-01	법률개정안 대안 미포함	일몰 예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혁

일자	내용	특례 일몰 시기
2014-01-0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환급 특례 조문 신설 (제 107 조의 2)	2015-03-31
2015-04-01	특례 공백기	-
2017-12-19	재도입	2018-12-31
2018-12-24	1 년 연장	2019-12-31
2019-12-31	1 년 연장	2020-12-31
2020-12-29	2 년 연장	2022-12-31
2022-12-31	3 년 연장	2025-12-31
2025-07-31	3 년 연장	2028-12-31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영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 종료

②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7의3)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자료: 기획재정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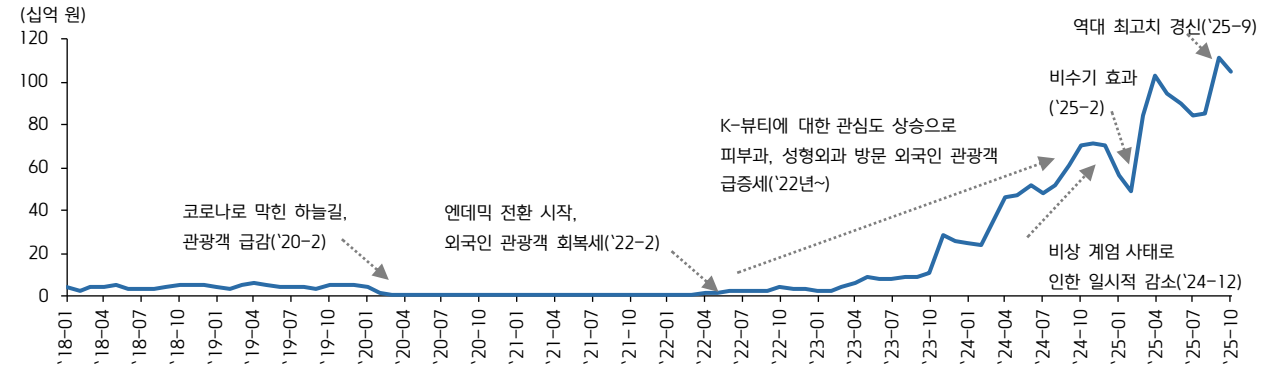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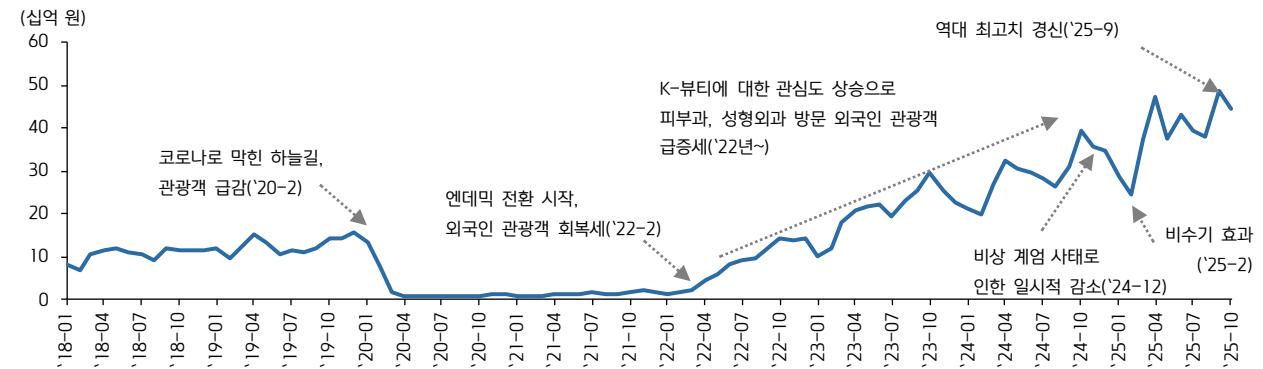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외국인 피부과 의료 소비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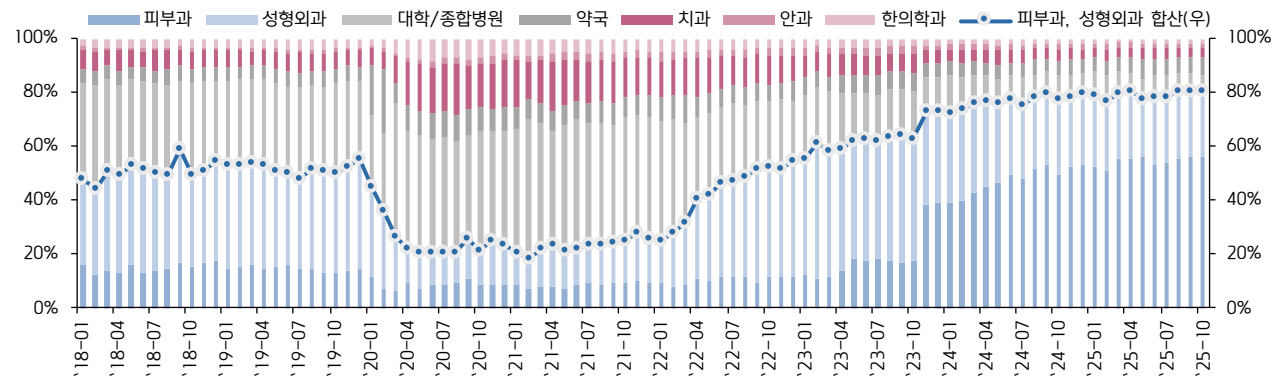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월간 외국인 성형외과 의료 소비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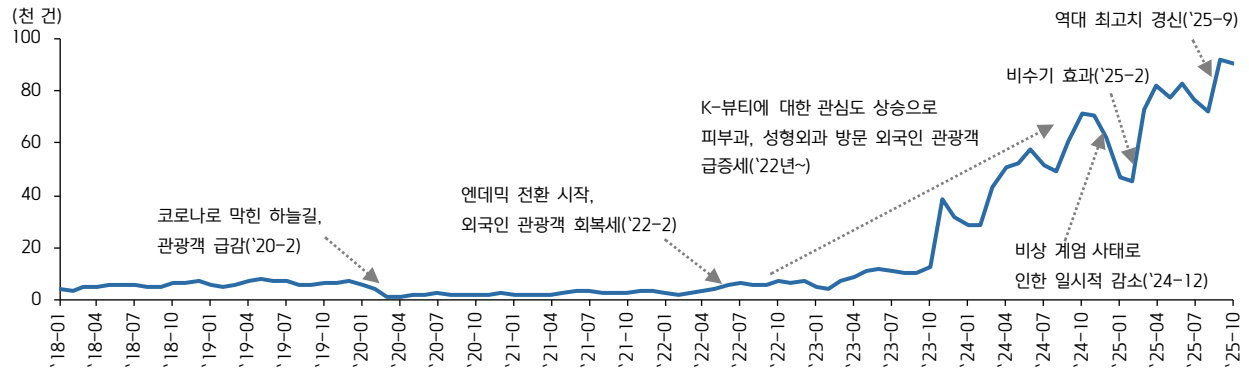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월간 외국인 의료 소비액 진료과목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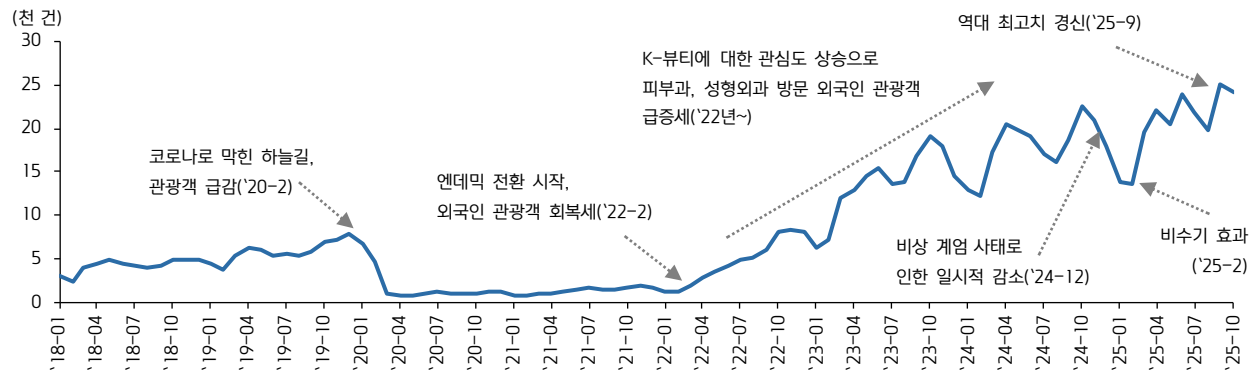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월간 외국인 피부과 의료 소비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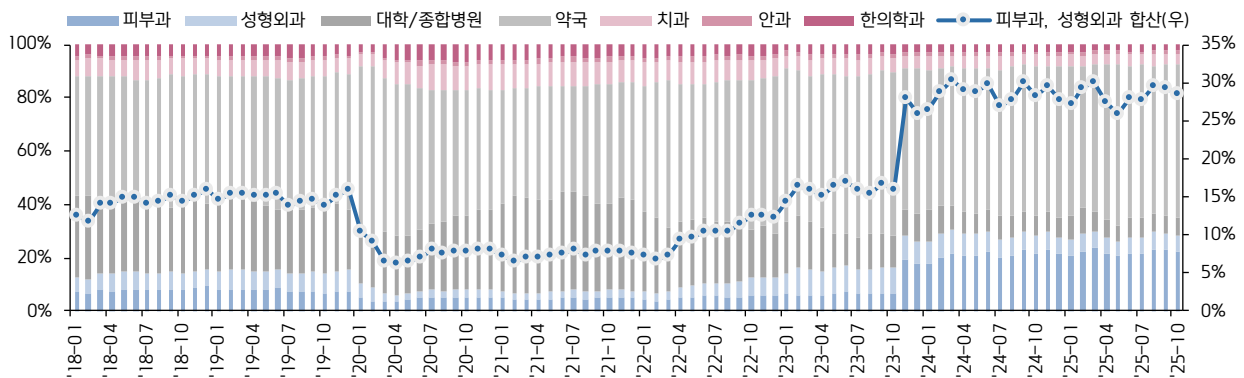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월간 외국인 성형외과 의료 소비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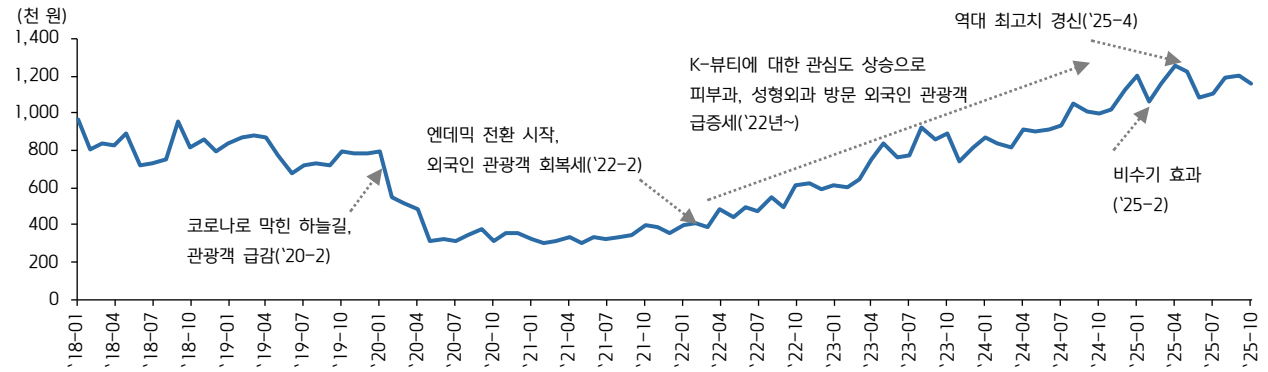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월간 외국인 의료 소비건수 진료과목별 비율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월간 외국인 피부과 의료 진료당 소비액 추이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업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추가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추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추가 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4/10/01~2025/09/30)

매수	중립	매도
95.21%	4.79%	0.00%